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911

제안연월일: 2024. 12.

제 안 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시시기기
	(제출자)	(제출일)	심사경과
2200061	김승수의원	2024.5.31.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
			위원회(2024.8.26.) 상정 후 제안
2201081	김선교의원	2024.6.27.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201153	정부	2024.6.28.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4.8.26.)

- 가.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11.28.)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나.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24.12.3.)는 위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부양의무자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여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이를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하며, 담당공무원의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법률 제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제15조제1항 및 제4항과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는"을 "가구원(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을 것

제15조제1항 중 "부양의무자에"를 "가구원에"로, "부양의무자의"를 "가구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양의무자가"를 "가구원이"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부양의무자가"를 "가구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양의무자의"를 "가구원의"로 한다.

제54조의2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을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으로 한

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생계급여·의료급여"를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2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u>부양의무자(부양의</u>	가구원(생활조정수
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당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
제15조제1항 및 제4항과 제16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
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는	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	
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③
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	
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	
원이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	
급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면 제출	
은 생략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을 것를 받고 있을 것

2. • 3. (생략)

④ (생략)

제15조(조사·질문 등) ① 국가보 저 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 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 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 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 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 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 류나 그 밖에 소득 •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 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 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 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 ③ (생 략)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

12/11/6/11/21/9/14/29/9/
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
를 받고 있을 것
2.・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에15조(조사·질문 등) ①
가구
원에 원에
<u>가구원의</u> -
<u></u>
· ② · ③ (현행과 같음)
4
_

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 당수급자와 그 <u>부양의무자가</u>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 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 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 다.

⑤ (생략)

제16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 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 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부 양의무자가 제14조제2항에 따 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 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 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u>가구원이</u>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u>가구</u>
<u>원이</u>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 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 수당수급자와 그 <u>부양의무자의</u>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 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 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 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제54조의2(양로지원) 보훈보상대 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 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u>부양</u> 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 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

<u>.</u>
②
<u>가구원의</u>
③ ~ ⑦ (현행과 같음)
∥54조의2(양로지원)
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
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할 수 있다.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7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자료, 소득·재산에 관한자료, 소득·재산에 관한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등 각종연금·보험에 관한자료, 설계급여·의료급여수급에 관한자료, 출입국정보등을 관계기관의장에게 요청할수있다.이경우요청을 받은관계기관의장은 정당한사유가없으면 그요청에 따라야한다.

1. ~ 1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u>생계</u>
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 육급여
<u> </u>
,
 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